

#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5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10월 31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서울시의회 내외부의 언론홍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언론 및 홍보 담당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시의회 내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전담 부서를 신설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기존 공보실을 언론홍보실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시민권익담당관을 신설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

-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       | : 규제심사 대상 해당 안됨 |
| 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 설치)   | : 해당없음          |
| 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 등)     | : 해당없음          |
| 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    | : 평가제외          |
| 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 | : 제외법령          |
| (6) 갈등조정담당관(공공갈등진단)   | : 갈등사항 없음       |

라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도 붙임
- (2) 입법예고(2016.10.13.~10.18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별도 붙임

※ 작성자 : 기획담당관 의회협력팀 운영대 (☎ 2133-6632)

##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공보실·의정담당관·의사담당관·입법담당관”을 “언론홍보실·의정담당관·의사담당관·시민권익담당관·입법담당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실·담당관의 설치) 처장을 보좌하는 하부조직으로 <u>공보실·의정담당관·의사 담당관·입법담당관</u> 및 예산정책담당관을 둔다.	제4조(실·담당관의 설치) 처장을 보좌하는 하부조직으로 <u>언론홍보실·의정담당관·의사 담당관·시민권익담당관·입법담당관</u> 및 예산 정책담당관을 둔다.

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**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 없음**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

**3. 미첨부 사유**

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의 업무 조정 등 사무처 소속기관의 개편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
**4. 작성자 :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운영대(☎ 2133-6632)**